위원회설치규정 3-1-1

규정번호 3-1-1
제정일자 1996.12.20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,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치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실에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실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21.06.21.)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천재지변, 기타재해나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화상회의 화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 서명란을 대체할 수 있다.(신설 2022.09.26.)

제 8 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관계부서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<생략>

<2> 위원회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②, 제4조②·④, 제6조, 제8조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3> - <102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(제7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3항)